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기] <개정 2022. 2. 28.>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 (법인명) 성명 기재	주민등록번호 (법인 · 외국인등록번호)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			
	주소 (법인소재지)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 기재(도로명 주소)	(휴대) 전화번호 연락처 기재			
자기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) 중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	원	③ 주식 · 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, 이에 준하는 매각으로 조달하는 대금 기재	원	
	④ 증여 ·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조달자금 금액 기재	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중인 현금, 펀드/보험금상품 해지 등 이에 준하는 자금 금액 기재	원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 (관계 :) [] 그 밖의 관계 ()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 기재		[] 보유 현금 () [] 그 밖의 자산 (종류 :)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 기재	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대금 금액 기재	원	⑦ 소계 ②,③,④,⑤,⑥ 항목의 합산 금액 기재	원	
① 자금 조달계획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우측 대출 합계	원	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금액	원	
			신용대출 상기 주담대 이외의 신용대출 금액 (마이너스 통장 등)	원	
			그 밖의 대출 (대출 종류 :) 금회 중도금 집단 대출 및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	원	
	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금회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하여 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한 경우 기재	
차입금 등	⑨ 임대보증금 금회 취득 주택의 임차(전,월세) 계약 시 받을 보증금을 주택의 취 득 자금으로 사용시 금액 기재	원	⑩ 회사지원금 · 사채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 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 사용 시 기재	원	
	⑪ 그 밖의 차입금 가족, 친인척, 제3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주택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시 금액 기재	원	⑫ 소계 ⑧,⑨,⑩,⑫ 항목의 합산 금액 기재	원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 (관계 :) [] 그 밖의 관계 ()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 기재				
⑬ 합계	*총 거래금액(분양가+발코니확장가) 금액과 일치해야함		⑦,⑫ 항목의 합산 금액 기재		
⑭ 조달자금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합계와 동일한 금액 기재(분양가+발코니확장가)			
	⑮ 계좌이체 금액	중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(현금 등으로 지 급하는 금액 외 모든금액)기재			
	⑯ 보증금 · 대출 승계 금액	중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 금의 금액 기재	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⑮,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기재			
	지급 사유 ()	⑰번 항목 해당시 현금(수표)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 기재			
⑱ 입주 계획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 기재	[√] 본인 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 : 2025년 04 월)	[] 임대(전 · 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 · 제7항 · 제9항 · 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
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날짜 기재 금지(신고 시 작성예정)

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<p>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: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주식·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·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증여·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: 증여세·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.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.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. 회사지원금·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 "자금조달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(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)을 적고,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,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2. ② ~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3. ② "금융기관 예금액"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로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4. ③ "주식·채권 매각대금"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5. ④ "증여·상속"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년에 √표시를 하며,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6. ⑤ "현금 등 그 밖의 자금"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)을 적고,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"보유 현금"에 √표시를 하고, 현금이 아닌 경우 "그 밖의 자산"에 √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.
7. ⑥ "부동산 처분대금 등"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,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.
8. ⑦ "소계"에는 ② ~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⑧ ~ ⑩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10. ⑧ "금융기관 대출액 합계"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, 주택담보대출·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년에 대출액을 적으며,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.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의 해당 년에 √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,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 중 "보유"에 √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(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)를 적습니다.
11. ⑨ "임대보증금"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.
12. ⑩ "회사지원금·사채"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,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13. ⑪ "그 밖의 차입금"에는 ⑧ ~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년에 √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14. ⑫에는 ⑧ ~ ⑩의 합계액을,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5. ⑭ "조달자금 지급방식"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16. ⑮ "계좌이체 금액"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.
17. ⑯ "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"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.
18. ⑰ "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"에는 ⑮,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(수표)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.
9. ⑱ "입주 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(다세대,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)으로 적으며, "본인입주"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, "본인 외 가족입주"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.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"그 밖의 경우"에 √표시를 합니다.